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45 2020. 6. 10.(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최경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0년 5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6월 10일

-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경천 의원)

가. 제안사유

○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O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O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추진 사업의 내용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 지원체계 구축,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동 인식 개선 홍보 등
- O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O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이강근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2017년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종합실태 조사 | 에 따르면. 〈향후 진로 계획〉 (단위: %)

청소년들은 향후 3년 이내의 진로 계획에 대해 상급학교 진학이 42.3%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두 번째로 34.9% 였으며, 연령별로는 13~18세 청소년은 학교 진학 희망이 82.1%, 19~24세는 취업이 54.8%로 희망 1위를 차지

갼분		상급학교 진학	취업	창업	가업	이직	현 직장 유지	미결정	계티
	2011년	52,9	28,6	2,5	0,0	-	-	11,7	4,2
연도별	2014년	57.6	27,6	1,6	0,2	-	*	10,9	2,0
	2017년	42,3	34,9	0,7	0.0	3,1	6,7	11,6	0,8
연령별	13~18세	82,1	9,6	0.3		0,2	0,3	7.2	0.1
	19~24세	10,9	54,8	0,9	0,0	5,3	11.6	15,0	1,3
성별	남	42,4	35,1	0.7	7/24	2,5	3,9	14,3	1,2
	여	42,1	34,7	0,7	0,1	3,8	9,8	8,5	0,3
지역별	대도시	41.7	33,6	0.7	Œ	3,6	6.5	13,2	0,8
	중소도시	43,1	35,7	0,3	0,1	2,9	6,7	10,6	0,7
	농산어촌	41,9	36,7	1.4	: -	2,3	7.1	9.6	0.9

했으며,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상급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이 줄어들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추세임.

○ 또한, 지난 '19.11월 충북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11,783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49.3%(5,804명)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거나 폭언, 폭력, 체벌, 성희롱, 임금체불 등의 부당 한 대우를 받는 경험이 있는 학생이 15.9%(3,181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학생이 54.8%(3,181명),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49.4%(2,869명)로 조사됨.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충청북도 알바인권센터는 청소년 인권강사 양성교육과 알바 인권교육,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센터 명칭부터 대상이 아르바이트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고, 업무도 별도 인력이 아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이 담당하고 있어, 취업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을 포괄하여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9~24세)을 위해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계획수립에서 시행에 이르는 전 과정의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O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용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도 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한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하고 있고, 현재 충청북도 알바인권센터의 대상 연령이 24세 이하인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근로기준법」제64조에서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취직인허증을 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¹⁾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에서 청소년 범위를 24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없음.

¹⁾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른 시·도 조례의 청소년 범위>

지방자치단체	조 례 명	청소년의 범위
서울시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9세 이상 24세 이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4세 이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4세 이하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4세 이하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19세 미만
전라남도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4세 이하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9세 이상 24세 이하

- 안 제3조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
 - 특히,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실시는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9. 7. 12.)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교육청과 협의 추진 필요함.
- 안 제4조는 사용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 금지와「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 청소년 노동 인권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노동 인권 상담·지원체계 구축·교육·프로그램 개발·실태조사 등을 추 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안 제7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식개선 및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증진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조항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 관서,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등 관계 기관 및 청소년·노동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 안 제9조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한 충청북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기존 '충청북도 알바인권센터'를 '충청북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로 변경할 것과 전문 상담 인력의 배치를 주문하고 있음.
 - 단, 전문 상담 인력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및 센터와의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O 안 제10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함.

다. 종합 검토의견

- O 최근 취업과 아르바이트를 희망하고 직접 노동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으로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O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최경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5 발의연월일 : 2020년 5월 29일

발 의 자 : 최경천, 박상돈, 박형용,

심기보, 육미선, 이상욱,

이상정

1. 제안이유

○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나.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추진 사업의 내용과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
- 다.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라.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49호

다. 협 의 : 여성가족정책관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 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 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 3. "사용자" 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합 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도가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
 - 2.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 3. 제7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 5. 계획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등 지원체계 구축
 - 2.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3. 청소년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 4.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활동 지원
 - 5.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 ②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 방고용노동관서,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청북도청소년종합 진흥원 등 관계 기관 및 청소년·노동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 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센터에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자도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③ 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대한민국헌법

-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

2. 비용 발생 요인

○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친화 사업장 선정· 홍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3. 관련조문

- 안 제6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 O 안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 O 안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0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사업 추계 및 물가 상승률 고려하여 산출

나. 추계 결과 :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323,8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323,800	47,800	56,000	66,000	77,000	77,000

※ 단위사업별 비용추계내역 : 별첨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	세 입	47,800	56,000	66,000	77,000	77,000	323,800
도비		47,800	56,000	66,000	77,000	77,000	323,800
,	세 출		56,000	66,000	77,000	77,000	323,800
인권상담 종사자 인건비(1명), 노무사연계 포함		38,400	39,000	39,000	40,000	40,000	196,400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양성		3,030	5,000	5,000	5,000	5,000	23,030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1,970	2,000	2,000	2,000	2,000	9,970
친화사업장 발굴 및 홍보		4,400	5,000	5,000	10,000	10,000	34,400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활동 지원		-	5,000	10,000	10,000	10,000	35,000
청소년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	-	10,000	10,000	20,000
청소년인권실태조사		-	-	5,000	-	-	5,000
재원 조달		47,800	56,000	66,000	77,000	77,000	323,800
	소 계						
의존	보조금						
재원	지방교부세						
	소 계						
자체	지방세	47,800	56,000	66,000	77,000	77,000	323,800
수입	세외수입						